

국 회 운 영 위 원 회

2900



문서번호 운영 제 11 호

시행일자 1994. 2. 15.

수신 의 장

선결	의 강		지		
			시		
접	일자 시간	94. 2. 15 14:00	결 재·공 람	총 랑	
수	번호	348		차 랑	
	처리과	의안과		국 랑	
	담당자	이 병 기		과 랑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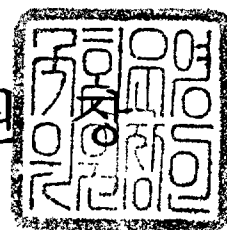
제목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

報告後上程

제166회국회(임시회)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('94. 2.15)에서 정치관계법심의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여 붙임과 같이 제안합니다.

붙임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00부. 끝.

국 회 운 영 위 원



공백

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

議案	
番號	

提案年月日：1994年 2月 日

提案者：國會運營委員長

1. 主 文

- 가. 統合選舉法, 政治資金에 관한法律 및 地方自治法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會法 第44條의 規定에 의거 國會내에 「政治關係法 審議特別委員會」를 구성한다.
- 나. 委員數는 16人으로 한다.
- 다. 特別委員會의 活動期間은 1994年 6月 30日까지로 한다.

2. 提案理由

第165回國會(定期會)에서 國家安全企劃部法과 政黨法을 개정하고 通信秘密保護法을 제정하는데 이어 그간 政治改革 論議의 攄점이 되어 온 統合選舉法, 政治資金에 관한法律 및 地方自治法을 合理的으로 조속히 개정·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임.

공백